

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3일

농소3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**	장** 1978-04-17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02-13